#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397

발의연월일: 2021. 9. 2.

발 의 자 : 홍기원 · 조오섭 · 박상혁

김경협·허 영·박 정

김영배 • 윤미향 • 조응천

윤영덕 • 이수진 • 오기형

천준호 · 황운하 · 윤재갑

이수진(비) · 김영주 · 이형석

김회재 · 우원식 의원

(20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며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와 지역내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17년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45개의 지자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특히, 건축물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해체공사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와 같이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가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따라서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 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87조의2).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73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를 "및"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 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 치하여야 한다.
- 1.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허가면적(5개년 평균) 또는 관할 구역 내 노후건축물 수준이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이 법률 제17733호 건축법 법률 제1773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 립) ① ------ 및 -----립) ① 시·도지사 및 인구 50 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 치할 수 있다. 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 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 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 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지사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 체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축 허가면적(5개년 평균) 또는 관할 구역 내 노후 건축물 수준이 전국지방자치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상	<u> </u>
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히	<u> </u>
는 지방자치단체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_
	_
	_
	_